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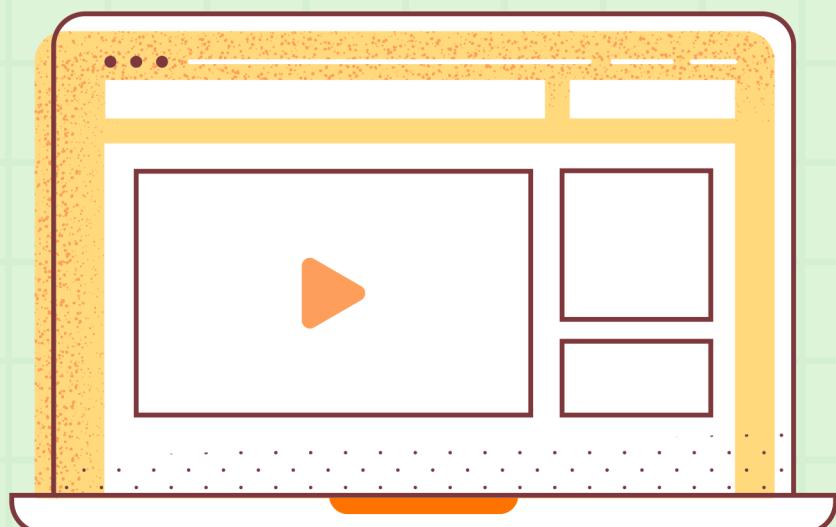


Q&A로 쉽게 알아보는!



목회자 소득의 과세/비과세 항목

본 내용은 2023년 5월 8일 [종교인소득신고 워크숍] 중
최호윤 회계사의 강의 일부를 카드 뉴스로 정리한 것입니다.





Q1.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모든 금액이 과세대상인가요?

A. 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세법에서 열거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2. 법정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교회가 납부하는 금액(50%)은 과세대상인가요?

A. 전체 법정 보험료 중 절반을 사용자인
교회에서 부담하지만 혜택은 목회자
본인이 누리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교회에서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이기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Q3. 법정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개인부담분을 교회가 납부하는 경우는?

A.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사용자 부담금 외 나머지 50%)를

교회에서 납부한다면

해당 금액은 본인의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Q4. 교회가 납부하는 교단 연금 보험료는 비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교단 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니므로 목회자가 가입한 일반
금융상품에 납부할 불입금을 교회가
대신 납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Q5. 매월 실제 지출한 목회 도서비, 목회 심방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A. 목회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회자 본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6.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목회 도서비, 목회 심방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A. 목회 활동과 관련성이 있고.

도서가 교회의 도서로 분류되며

교회가 정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Q7. 노트북을 구입하여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 소득으로 보나요?

A. 지급된 노트북이 교회의
재산으로 관리되면 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목회자
개인 소유로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Q8. 목회자 개인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비용을 정산 받는 경우는?

A. 교회가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Q9. 목회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 월세 (또는 차입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회가 지급하는 경우는?

A.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임차한 주택의 관리 비용을

교회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Q10. 목회자 자녀 학자금을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 소득에 해당할까요?

A.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선정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 www.cfan.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cfan05/

유튜브 www.youtube.com/@CFAN_TV



Church Financial Accountability Network

교회재정건강성운동